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7,032,000	10,110,960
일반회계		321,770,000	9,653,100
특별회계		15,262,000	457,86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274,063	38,222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455,000	73,65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643,000	109,29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28,389	3,852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5,335	1,960
	드림빌특별회계	2,394,091	71,823
	주택사업특별회계	71,600	2,14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45,522	10,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885,000	146,5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43,32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